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85
----------	------

2018년 3월 7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해경 의원(찬성자 11명)
- 나. 발의일자 : 2018년 2월 13일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19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8년 2월 26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해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다수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사용되는 복식은 정확한 고증과 재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 복식이 사용될 경우,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

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 (안 제6조의2)

다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(2)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(3)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정옥)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사용되는 복식의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고,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전문가 참여와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 하도록 제안됨.
- 우리 위원회는 이혜경 의원(중구2, 자유한국당)의 제안으로 2017년 ‘복식(服飾)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행사 재연방안 연구’

용역을 시행하였고,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전통 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복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수 발견하였음.

- **남이장군사당제** : 남이장군 갑옷 및 군병들 복식이 18세기 이후 군복으로 재현되어 조선 전기 의복과 일치하지 않음
- **세초연** : 관리들이 착용한 단학 흥배는 조선 후기의 형태로 공작, 학, 모란, 구름 등의 모양이 들어갔어야 함
- **정조대왕 능행차** : 정조의 복식이 구간별로 상이해 한 인물로 보이지 않고, 혜경궁 홍씨의 붉은 복식은 검증이 필요함
- **관악 강감찬 축제** : 출정 행렬 인원 중 현대 의복(선글라스, 양복 바지, 워커)을 착용한 사례가 있음

이에 따라 동 연구는 ① 시대 복식 연구를 토대로 정확한 고증을 통해 의상을 제작하고 ② 행사 출연자들의 사전 교육 및 전통 복식 전문가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며 ③ 축제 복식의 철저한 수선 및 보관으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안하였음.

- 한편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우리 위원회 이혜경 의원의 발의로 우리 민족 고유의상인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 중에 있음.

동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상기 연구용역 결과 취지를 감안하여 복식의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개최가 복식 문화가치의 회복 및 전통문화 계승·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.

안 제6조의2 현행 및 개정안 비교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고유명절 및 주요행사) 시장은 설날,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	제6조(고유명절 및 주요행사)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제6조의2(전통문화행사 및 축제) 시장은 <u>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- 안 제6조의2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시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하도록 전문가 참여 및 적정 예산 배정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고증을 통한 정확한 복식의 제작·교육·관리를 견인하므로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, 조례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함을 밝힘.

한편, 우리 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동 개정안 이외에도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식 재연을 위해 사업 입찰시 ① 공고 및 과업지시에 복식 재연 적정가격과 복식 전문가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, ② 심사위원 구성 시 복식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, ③ 심사기준에 복식 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(업체)를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혜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8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2월 13일

발 의 자 : 이혜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자(강제), 김인제, 김제리, 남재경,
남창진, 박중화, 송재형, 신건택,
우미경, 주찬식, 황준환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다수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사용되는 복식은 정확한 고증과 재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 복식이 사용될 경우,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
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다. 기 타 : 신·구대비조문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전통문화행사 및 축제)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절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6조의2(전통문화행사 및 축제)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절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(전통문화행사 및 축제)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 - 단, 전통문화행사에 기 예산편성된 복식 제작·임차비용 및 전통행사 재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비용추계에서 제외
 - 무형문화재, 유네스코세계유산 지정 등으로 복식고증을 기 완료한 행사는 비용추계에서 제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(同조례 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≍ 420,477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중 3년 동안 420,477천원으로 연평균 140,159천원
- 추계의 전제
 - 추계 물가상승률 미반영
 - 기 복식고증 완료된 행사 제외하고 2년마다 6개 행사 대상 고증연구 실시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≍ 420,477천원

〈단위: 천원〉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전문가 자문 (제6조2)	30,000		30,000		30,000	90,000
	전통복식 고증연구 (제6조2)	110,159		110,159		110,159	330,477
	소계(b)	140,159		140,159		140,159	420,477
□ 총 비용(b-a)		140,159		140,159		140,159	420,477

1) 전문가 자문 ≙ 90,000천원

- 총비용 = 30,000천원(연간비용) × 3(년) = 90,000천원

· 자문수당 : 1,000천원(자문료) × 5명 × 6회 = 30,000천원

※ 2016년 역사문화재과 유사사업(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복식고증 자문회의) 및 「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)」 참조

※ 서울시 주최·지원 전통문화행사 중 복식 고증 필요한 행사 6개('18년 기준)

- 정조대왕 능행차, 과거시험 재현, 남산봉수의식, 선농문화제, 낙성대인헌제, 노원평전투 기념행사 등

2) 전통복식 고증연구 ≙ 330,477천원

- 총비용 = 110,159천원(연간비용) × 3(년) = 330,477천원

· 고증연구 학술용역

▶ 인건비 : [3,169천원(책임연구원)+2,430천원(연구원)+1,624천원(연구보조)] × 2개월 × 6회 = 86,676천원

▶ 직접비 : [500천원(사무용품) + 400천원(인쇄비) + 400천원(출장비)] × 6회 = 7,800천원

▶ 일반관리비 등 : 94,476천원(소계) × 6%(이윤율 등) = 5,669천원

▶ 부가가치세 : 100,145천원(공급가액) × 10%(부가가치세율) = 10,014천원

※ 2016년 역사도심재생과 유사사업(대한제국기 수문장 교대식 복식도안 제작 용역) 및 「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(조직담당관-309)」 단가기준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이은영

분석관(주무관) 장호진

☎ 02-3705-1279

e-mail : hwarang7@seoul.go.kr